

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5) 상정

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3. 15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제안이유

부천시 각종 위원회 출석 위원들의 실비변상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아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주요골자

위원회 출석 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 일비를 일비 및 수당으로 조정함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71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7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부천시 각종 위원회 출석 위원들의 실비변상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아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위원회 출석 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 일비를 일비 및 수당으로 조정함(안 제3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일비 등)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일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3조(일비 등)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